

# 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12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-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, 2012.7.11 개정)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금고 지정 조항 정비(안 제4조제1항제2호)
  -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한 조항 삭제
- 금고 지정 기준 중 협력사업비 관련 조항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(안 제7조제1항)
  - 위원수 확대 9~12인(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)
-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개정(인 제5조제2항 별표)
  - 대손충당적립율 배점 하향(3점⇒2점)
  -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배점 하향(3점⇒2점)
  -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이용 편의성 배점 하향(6점⇒5점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2012. 7. 11 개정된 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)』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“금고”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신설하였고
  -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
  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면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일부 세분화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인 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』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